

##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(안)

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 - 57호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,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“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”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1일  
여 성 가 족 부 장 관

### 1.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

#### 1) 한부모가족(“부” 또는 “모”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)

- 선정기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)
 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
- 복지급여 지급기준

지원종류	지원대상	지원금액
아동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</li> </ul>	자녀 1인당 월 13만원
추가 아동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</li> </ul>	자녀 1인당 월 5만원
아동교육 지원비 (학용품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</li> </ul>	자녀 1인당 연 5.41만원
생계비 (생활보조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</li> </ul>	가구당 월 5만원

2) 청소년 한부모가족(“부” 또는 “모”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)

○ 선정기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)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인 가족

○ 복지급여 지급기준

지원종류	지원대상	지원금액
아동양육비	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의 자녀	자녀 1인당 월 18만원
아동교육 지원비 (학용품비)	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	자녀 1인당 연 5.41만원
생활보조금	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	가구당 월 5만원
검정고시 학습비	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으로서,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	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
고등학생 교육비	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으로서,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	수업료, 입학금 실비
자립촉진 수당	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으로서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	가구당 월 10만원

2. 적용기간

1) 선정기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) :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

2) 복지급여 지급기준 :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

### 3. 참고사항

#### 1) 소득인정액 기준

구분 \ 가구원수		2 인	3 인	4 인	5 인	6 인
2018년 기준 중위소득		2,847,097	3,683,150	4,519,202	5,355,254	6,191,307
생계급여 수급자 (기준 중위소득 30%)		854,129	1,104,945	1,355,761	1,606,576	1,857,392
한부모 및 조손가족	기준 중위 소득 52%	1,480,490	1,915,238	2,349,985	2,784,732	3,219,480
	기준 중위 소득 60%	1,708,258	2,209,890	2,711,521	3,213,152	3,714,784
청소년 한부모 가족	기준 중위 소득 60%	1,708,258	2,209,890	2,711,521	3,213,152	3,714,784
	기준 중위 소득 72%	2,049,910	2,651,868	3,253,825	3,855,783	4,457,741

#### 2) 연령 기준

- 만 5세 이하 아동 :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만 14세 미만 아동 :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: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만 25세 이상 한부모 :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
#### 3) 중복지급 제한
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

<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>

지원종류	중복지급 제한 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양육비</li> <li>● 추가 아동양육비</li> <li>● 생활보조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</li> <li>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</li> <li>●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교육지원비 (학용품비)</li> <li>●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</li> <li>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</li> <li>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</li> </ul>